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6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이건태·최혁진·김동아
박지원·조인철·박균택
전현희·진선미·위성곤
북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녹색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하 이 조에서 “녹색사업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
2. 정보 제공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4.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5. 녹색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그 밖에 녹색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9조(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지원의 대상,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절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49조(녹색사업전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하 이 조에서 “녹색사업전환”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u>1. 녹색사업전환 대상 중소기업자의 발굴</u> <u>2. 정보 제공</u> <u>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u>

4.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의 연계

5. 녹색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
발 및 전직훈련 지원

6. 그 밖에 녹색사업전환 추진
에 필요한 지원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녹색
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 분
야에 해당하는 업종, 선정 절
차, 지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